

#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 審查報告書

1992. 6. 26.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2. 6. 28 (임병설의원 외 7인 발의)

나. 회부일자 : '92. 6. 19

다. 상정일자 : 제11회 영동포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 ('92. 6.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병설 의원)

#### 가. 제안이유

1991. 12. 3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영동포구 회의규칙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종전에는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시 본회의에 의결토록하고 예산 및 결산안의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므로써 보다 심도있는 의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그 동안의 의회운영 경험과, 국회법, 시의회 회의규칙등을 참고로 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해야할 부분을 개정토록 하였고, 본 안건을 현행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회의 규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가 구성 됨에 따라 종래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시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케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함.
- 예산및 결산안의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함.

###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의회 회의규칙중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본안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전의 내용으로써 사무국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제2조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하고, 의장의 권한으로 결정하면 조항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신설조항에서 종전단서로 있던 내용을 항으로 신설하며, 조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은 의무를 강조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중요한 조항만 보고를 드림

첫째,

제19조 (의안의회) 제목을 "상임위원회 회부"로 개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전 의안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던 것을 상임위원회 설치로 인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안전을 회부하여 심사케 하던것으로 제목을 개정하는 것이며, 동조 제2항은 안전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므로 조속히 안전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며, 제19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제19조의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므로 의회 규칙을 세분하는 반면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고 심사기간을 규칙으로 정하여 기간내에 처리될 수 있게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므로 의안을 신중히 심사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어 신설된 것으로 판단됨.

둘째,

제24조의 2 (재회부) 신설입니다.

종전 규칙에 보면 재회부 조항이 없습니다. 제24조의 2를 신설함으로 의안의 사안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심사한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할 수 있도록 안전 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셋째,

제55조의 2 (연석회의) 신설

안전을 심사할 때 또는 심의전 안전의 내용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하거나 또 안전 배정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를 대비하여 위 조항을 신설하여 내용을 심사함으로써 원만한 안전 처리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됨.

넷째,

제60조 (예산안 심의) 종전 규칙을 보면, 예산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과를 보고케 되어 있으나 역시 상임위원회 설치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토록 개정한 것을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한단계 더 거치면서 정밀한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다섯째,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내용중 꼴 부분인 “심문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섯째,

제73조 (경호) 현행 의회에서 필요시 경찰관의 경호 요청을 의장이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의회의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결론

의회가 회의진행 및 내부 규칙을 정하여 회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과 회의진행 및 의원활동을 원활히 하며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모든 권한이 분산되어 의원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의회운영 규칙이 될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실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별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1부.

##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의안	
번호	77

발의년월일 : 1992년 6월 18일

발의자 : 임병설의원외7인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회의규칙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상임위원회가 구성 됨에 따라 종래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시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케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한다.
- 나. 예산 및 결산의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규칙제

호

##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등록) 중 “간사에게”를 “사무국에”로 한다.

제 3 조(의석배정)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 15 조(의사일정)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사일정)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8 조(의안의 제출·발의) 중 “제출”을 “제출·제안”으로 하고, “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 19 조(의안의 회부)의 제목 “의안의 회부”를 “상임위원회 회부”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전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9조의 2 내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특별위원회 회부)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전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9조의 3(심사기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전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9조의 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 제2항중 “의제가” 앞에 “본회의의”를 삽입 한다.

제23조(번안)중 “발의한다”를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2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안전심의) ①본회의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전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전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2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 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전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중 “선출된”을 “매회기 선출 된”으로, “간사가”를 “사무국장이”로 한다.

제50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 2(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의안의 제출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5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 2(연설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설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설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설회의에 부의할 안전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설회의는 안전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 2(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예산안심의)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3항중 “예결위원회”를 “소관상임위원회”로, “본회의”를 “예결위원회”로 한다.

**제60조 (예산안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4조 (결산안의 심사)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 (결산안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0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3조 (정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장의 제목중 “제11장”을 “제9장”로 한다.

보칙의 제목 “보칙”을 “제10장 보칙”으로 한다.

早春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등록)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u>의회간사에게</u>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조(등록) ..... .....<u>사무국에</u>..... .....</p>
<p>제3조(의석배정) ①<u>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간사가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조(의석배정) ①.....<u>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u></p> <p>②<u>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u></p>
<p>제15조 (의사일정)</p> <p>①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u>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u></p>	<p>제15조 (의사일정)</p> <p>①(현행과 같음)</p> <p>②<u>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u></p> <p>③(현행 제2항과 같음)</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u>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 한다.</u></p>	<p>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u>제출·제안.....</u> .....<u>한다.</u></p>
<p>제19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u>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u></p> <p>② <u>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u></p>	<p>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u>보고하</u> 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p> <p>② <u>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u></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③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u></p> <p><u>④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u></p> <p><u>⑤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신 설)</p>	<p>제19조의 2(특별위원회 회부)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률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9조의 3(심사기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p>
(신 설)	<p>제19조의 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제21조(수정동의) ①(생략)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이 <u>의제가</u> 된다.  ③——④ (생략)	<p>제21조(수정동의) ①(현행과 같음)  ②.....  <u>본회의의 의제가</u>.....  ③——④ (현행과 같음)</p>
제23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p>제23조(번안) .....</p> <p>.....</p> <p>.....</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u>발의한다</u>.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전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다.</p>	<p>.....<u>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u>  <u>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u>  <u>의결한다</u>.....</p> <p>.....</p> <p>.....</p>
<p>제24조(안건심의) ①본회의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u>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u>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u>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u>.</p> <p>②——③ (생략)</p> <p>(신설)</p>	<p>제24조(안건심의) ①.....</p> <p>.....<u>그 안전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u>  <u>보고를 듣고.....다만, 위원회의 심사를</u>  <u>거치지 아니한 안전에 대하여는 제안자가</u>  <u>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u>  <u>사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의결로 .....</u></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의 2(재희부) <u>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u>의결로 다시 그 안전을 같은 위원회에 재</u>  <u>희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u>.</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u>선출된</u> 2인 이상의 의원 및 <u>간사가</u>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p>	<p>제4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매회기 선출 된.....사무국장이 ..... .....</p>
(신 설)	<p>제50조의 2(위원회의 제안) <u>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의안의 제출자는 위원장이 된다.</u></p>
(신 설)	<p>제55조의 2(연석체의) ① <u>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체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u>  <u>② 연석체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석체의에 부의할 안전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여야 한다.</u>  <u>③ 연석체의는 안전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u></p>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9조의 2(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0조(예산안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u>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는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u></p> <p>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u>본회</u> 외에 부의한다.</p> <p>③의장은 예산안을 <u>예결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예결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u>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u></u></p>	<p>제60조(예산안심의) ①.....</p> <p>.....</p> <p>.....<u>이를 소관</u></p> <p>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p> <p>.....</p> <p>.....</p> <p>.....<u>이를</u></p> <p><u>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에 부의한다.</u></p> <p>③.....<u>소관상임위원회</u>.....</p> <p>.....<u>소관상</u></p> <p><u>임위원회</u>.....</p> <p>.....<u>예결위원회</u>.....</p> <p>.....</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4조(결산안의 심사) ①<u>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64조(결산안의 실사) ①<u>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u></p> <p>②<u>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 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u></p> <p>③<u>의장이 결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0조 제3항을 준용한다.</u></p>
<p>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u>정계자격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 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여 심문 할 수 있다.</u></p> <p>②—— (생 탄)</p>	<p>제72조(당사자의 실문과 발언) ①..... ..... ..... <u>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73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u>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u></p>	<p>제73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u>의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p>제11장 <u>정 계</u></p> <p><u>보 칙</u></p>	<p>제9장 <u>정 계</u></p> <p>제10장 <u>보 칙</u></p>